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816

제출연월일: 2021. 9. 30.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구정과 중구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범위(안 제2조)

-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
-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사업계획서 제출 등(안 제3조)

라. 실적보고 등(안 제4조)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및 제14조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2666호, 2021. 8. 26.)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결(기획예산실-15646호, 2021. 9. 15.)

마. 입법예고: 2021. 8. 23. ~ 9. 13.(21일간)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구정과 중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
2.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실적보고 등)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 거 법 규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당 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의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됨

○ 따라서 조례안의 내용은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행정지원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정성목

○ 연락처: (052)290-3171